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부정행위 대상자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선도조치) 미준수

관계기관 백신고등학교

내 용

「백신고등학교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4조(부정행위자 성적처리)에 따르면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는 유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하고, 부정행위자의 점수 부여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백신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 중 부정행위 의심으로 회부된 학생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지필고사 기간 중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신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평가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백신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경기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서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 범위, 평가목표, 문항의 유형 및 형태, 출제 및 편집 방법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평가 시행 전 학교에서는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백신고등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2020,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누락

백신고등학교에서는 2020,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수립하면서 부정행위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교과별·학년별 교차 검토 등을 통한 지필고사 문항 오류 방지 대책 미수립

백신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1차, 2021학년도 2학기 2차 지필고사

실시 전 교과별·학년별 교차 검토 등을 통한 문항 오류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에서 1교과 2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였고 2021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에서 2교과 3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문항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3. 평가 문항 출제 관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미실시

백신고등학교에서는 교내지필평가(2021학년도 1, 2학기 1, 2차 지필고사) 문항 출제에 대한 교과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백신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백신고등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복무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백신고등학교

내 용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복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복무별 관련 규정 및 처리지침은 아래와 같다.

○ 초과근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무시간은 제외하며,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 육아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가족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

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일 이내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검진의 경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일반검진의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5차, 2021. 7.)」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요령(1차, 2021. 11.)」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1일 후 이상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에게는 ‘병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휴가 사용 시 사용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증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백신고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외 34명이 복무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확인이 필요한 복무에 대해 관련 증빙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복무처리 부적정 내역

연번	구분	성명	부적정 사유	부적정 사용일
1	초과근무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사후 상신	2021. 4. 5.
2	초과근무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사후 상신	2021. 12. 6.
3	육아시간	○○○	최소근무시간 4시간 미만임에도 육아시간 사용	2021. 12. 10.
4	육아시간	○○○	최소근무시간 4시간 미만임에도 육아시간 사용	2021. 10. 25. 2022. 5. 20.
5	육아시간	○○○	최소근무시간 4시간 미만임에도 육아시간 사용	2021. 9. 15.
6	가족돌봄휴가 (유급)	○○○	사유 부적정: 부모 병원 진료 및 검사 사유로 가족돌봄휴가(유급) 사용	2021. 8. 18.
7	가족돌봄휴가 (유급)	○○○	서류 증빙 지연: 감사 수감 시 관련 서류 보완	2021. 7. 21.
8	가족돌봄휴가 (유급)	○○○	서류 증빙 지연: 감사 수감 시 관련 서류 보완	2021. 6. 28., 9. 16., 12. 16.
9	가족돌봄휴가 (유급)	○○○	서류 증빙 지연: 감사 수감 시 관련 서류 보완	2020. 10. 16. 2021. 4. 27., 10. 23.
10	공가	○○○	사유 부적정: 백신 3차 접종 다음날 후유증 사유로 공가 사용	2021. 12. 22
11	공가	○○○	사유 부적정: 코로나 19 백신접종 사유로 7일 이내 2회 공가 사용	2021. 7. 26.
12	공가	○○○	사유 부적정: 코로나 19 백신접종 사유로 7일 이내 2회 공가 사용	2021. 7. 26.
13	특별휴가	○○○ 외 22건	서류 증빙 별도 미확인	감사 수감 전체 기간

【조치할 사항】

- ① 백신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백신고등학교에 ‘기관주의’ 처분합니다.